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3일 한준호의원(찬성자 169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6.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6.18.) 상정,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준호의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정청래·

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입법취지와 추천 주체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방송의 사장추천위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인으로 구성하고, 사장선출과정에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와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을 명문화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임명절차대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사장임기를 보장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제46조제3항제1호의 “국회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을 “6명”으로 수정해야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을 반영하는데 합리적이고, 같은 항 제2호의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부분은 최민희의원안과 같이 활동 기간, 활동 내용, 회원수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노종면위원)

-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훈기의원안의 부칙과 같이 과거의 이사 선임 절차를 단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방송편성규약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영방송에 대해 일반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함.(이훈기위원)
- 방송편성규약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이정현위원)
- 방송편성규약 등과 관련하여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한민수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 방송편성규약과 관련해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편성규약이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는 점에서 편성규약에 대해서 이번에 입법이 안되더라도 과방위에서 관심가져주시기 바라며,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이훈기의원안의 부칙에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사장·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발의되어 있는데, 이사진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라도 정리가 필요함.(이훈기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방통위의 추천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 최민희의원안과 같이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학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방안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노종면위원)
- 제시된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통과되지 않아서 제22대 국회에서 방송정상화 4법을 신속성을 요하는 안건으로 의결을 했고, 그동안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준호의원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자구수정한 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임(김현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